

제2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임시회
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

2017. 3. 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행정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7. 3. .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3월 9일 / 장상기 의원 대표발의 외 6명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3월 20일

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17. 3. 20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장상기 의원)

□ 제안이유

저출산, 고령화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처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공원, 기타 지역에 반려동물 놀이터, 쉼터 등을 설치 운영하고, 길고양이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‘반려동물의 정의’ 신설(안 제2조)

나. 조 제목 ‘반려동물 등에 대한 시설운영 및 교육·홍보’로

변경하고, ‘반려동물 놀이터, 쉼터 등을 설치 운영’ 조문 신설
(안 제16조)

다. ‘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’ 조문 신설(안 제1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,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합 의 : 일자리경제과

라. 입법예고(2017. 3. 14. ~ 2017. 3. 18) 결과 : 의견 2건 있음

※ 의견내용 : 반려동물 놀이터 및 쉼터 설치장소 열거 삭제 및
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(붙임:의견서 참조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: 강희순)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보호
관리 및 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

○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

가. 안 제2조 제7호에 반려동물이란 정의를 신설하고

나. 안 제16조 제목을 “반려동물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”를
“반려동물 등에 대한 시설운영 및 교육·홍보”로 변경하고
공원 또는 기타지역에 반려동물 놀이터 또는 쉼터 등을 설치
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

다. 안 제18조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 하였음.

○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

반려동물의 보유가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반려동물 인구 1,000만 시대에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물학대와 반려동물 유실·유기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, 동물보호법,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,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과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5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○ 수정내용 : 붙임 수정대비표 참조

- ※ 붙임 1) 수정대비표 1부.
2) 관련 법령 1부.

<붙임 1> 수정대비표

수 정 대 비 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6조(반려동물 등에 대한 시설 운영 및 교육·홍보) 구청장은 공원 또는 기타지역에 반려동물 놀이터, 쉼터 등을 설치 <u>운영하</u>여야 하며, 관련기관 및 민간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, 동물보호운리의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 동물 대상별 교육 및 홍보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	<p>제16조(반려동물 등에 대한 시설 운영 및 교육·홍보) ----- ----- ----- <u>운영할 수 있으</u> <u>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8조(길고양이의 관리 등)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,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<u>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8조(길고양이의 관리 등) ① - ----- ----- ----- <u>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<붙임 2> 관련 법령

< 동물보호법 >

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·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1.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
2. 유실·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
3.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
4. 동물학대 방지,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5.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 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<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>

□제3조(시장의 의무)

-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,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.

□제4조(동물복지계획의 수립)

- ①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5.14.>
-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단위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제5조의 동물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<개정 2015.5.14.>

[붙임]

입법 예고 결과 요약서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공원녹지과	<p>○ 반려견 놀이터는 서울특별시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이 이용할 수 있는 등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,</p> <p>○ 반려동물 경우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불특정 동물에 대하여 공원내에 놀이터 및 쉼터를 조성할 경우 반려동물간의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소재, 지역주민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민원 다수 발생 우려가 있어,</p> <p>반려동물놀이터 및 쉼터 등 설치 운영지역에 대하여 특정지역(공원)을 명시하거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됨</p> <p>○ 의견안 제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개정안 : 구청장은 공원, 기타지역에 반려동물 놀이터시설, 쉼터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, · 의견안 : 구청장은 반려동물 놀이터시설,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, 	<p>○ 미반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반려견 놀이터, 쉼터 등의 설치 장소 삭제 의견 : 공원, 기타지역을 명시한 것은 설치지역에 대한 예시이고, 설치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설치 장소 삭제 의견은 미반영함 - 반려견 놀이터, 쉼터 등의 운영 삭제 의견 : 반려견 놀이터, 쉼터 등을 설치한 경우, 주변 청소 및 시설 관리 등이 필요하므로 시설물 ‘운영’의 삭제는 바람직하지 않음 <p>○ 반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반려견 놀이터, 쉼터 등의 설치를 재량규정으로 함 : 반려견 놀이터, 쉼터 등의 설치에 관해 지역주민들의 인식수준을 반영하여 담당부서가 판단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량규정으로 함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일자리경제과	<p>○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“길고양이 급식소 설치”의 한 가지 방안만을 조례에 명시하면서 의무규정을 둔다는 것은 찬반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배제함으로써 사회적인 갈등이 우려됨</p> <p>○ 예산 투자 대비 개체수 감소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음</p> <p>○ 사업시행의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재량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“길고양이의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”라는 의무규정을 “길고양이의 급식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”라는 재량규정으로 수정을 건의</p>	<p>○ 반영 :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운영 재량규정화</p> <p>-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이 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한 개체수 감소를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,</p> <p>- 길고양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차이로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부서가 인식개선 사업 등과 병행하여 실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운영을 재량 규정으로 함</p>